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1.10.24 (월) 14:00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희수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10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을 개발·공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행정기구(조직)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'은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